

IFOAM Statutes

국제 연맹국 간의 IFOAM 법령은 각 회원국들이 유기농업을 생태·사회·경제적으로 건전한 지속농업체제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에 동참한다.

이의 목적은 전 세계의 모든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고품질 식량을 공급함과 동시에 토양을 보호하고 비옥도를 증진시키며 환경오염과 재생가능하지 않은 천연자원의 이용을 최소화 하는데 있다.

1. 이름, 소재지, 언어(Name, Seat, Language)

연맹의 이름은 “IFOAM-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이다.

이것은 독일의 Bonn에서 등록되었으며 독일에서는 이름 뒤에 ”eingetragener Verein(등록된 연맹)”의 약자인 “e.V.” 가 표시된다.

연맹의 소재지는 독일의 Bonn에 위치한다.

연맹의 공식 언어는 영어이고 독일 당국을 상대할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에는 독일어를 공식 언어로 한다.

2. 법령의 목적(Statutory Purposes)

연맹의 목적은 유기농업의 증진을 통해 **인류와**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다.

~~연맹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기농업 운동을 이끌고 결속하며 돕고 있다. 이것의 목표는 유기농업의 원칙에 기초한 생태·사회·경제적으로 건전한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수용되는 것이다. IFOAM은 토양을 보호하고 비옥도를 증진시키며 환경오염과 재생가능하지 않은 천연자원의 이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전 세계의 모든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고품질 식량 생산을 증진시킨다.~~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연맹은 예를 들어 회원국 간의 지식과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기 위한 공적인 정보 및 의회와 행정 규정의 제정 시 대변인을 제공하며 이와 함께 생산, 제조 및 무역을 위한 기준 개발과 영구적 개정을 지원한다. 이것은 전 지구적 다국적 지역의 상호 협력 노력을 지원하고, IFOAM에 의해 공인된 인증기관들이 의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로고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연맹은 공공의 이익을 독자적이며 직접적으로 추구한다. 이 활동들은 자선적인 성격만을 갖는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것의 재정은 법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배타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이것의 회원들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나 균형적이지 않은 경우에 지불에 의한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이다.

3. 입회(Affiliation)

연맹에 입회하는 것에는 3가지 범주가 있다: 정회원(투표권을 가짐), 준회원과 후원자(투표권이

없음)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써의 입회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나 농업인들, 생산자들, 제조자들, 무역업자들,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연구, 교육, 훈련, 컨설팅, 인증, 설립과 창도(唱導)와 관련된 사람들을 제한하지 않는다.

모든 정회원과 준회원들은 활동적으로 연맹의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회원들의 활동은 주도적으로 법령의 목적과 연맹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회원들은 회원자격 요건에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정회원의 활동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단체들은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인들은 후원자로 입회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이것은 연맹의 목적과 이익에 반하는 입회자를 제명할 수 있다. 입회원들은 서면 성명서를 이용해 연맹에서 탈퇴할 수 있다.

입회 규정들의 내용이나 타당성 입증을 위한 참고문헌에 존재할 수 있는 입회 법령과 관련된 IFOAM과 입회원들 간의 논쟁은 법적인 행동에 의존하지 않고 입회 규정의 기본적인 부분을 만드는 German Institution for Courts of Arbitration(DIS)의 조정 규칙에 따라 마침내 조정될 수 있다.

조정 절차가 이루어지는 지역은 독일의 Bonn이다; 중재를 위한 법정은 한명의 중재자에 의해 구성 된다; 적용되는 실제적인 법은 독일 법이다; 중재과정의 언어는 영어이다.

4. 기구들(Organs)

연맹의 기구들은 총회, 세계 위원회와 집행부이다. 이사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전달한다.

5. 총회(General Assembly)

총회는 매 3년마다 열린다. 그것은 세계 위원회에 의해 서명으로 공지된다. 정회원 25% 이상, 또는 세계 위원회의 서면요청에 의해 임시 총회가 소집된다.

총회는 3개월 전에 공표되어야 한다.

총회에서는 의장을 선출한다. 총회의 결정은 의사록에 기록되고 이것은 총회에 참석했던 집행부 임원 중 한명에 의해 서명된다. 참조된 의사록은 각 회원들에게 보내진다.

정족수는 총회 개최 시 대표 회원수의 25% 이상일 때 충족된다. 총회에서 25% 이상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총회 소집(첫 번째)과 함께 동일한 의제를 갖는 두 번째 총회(다음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두 번째 총회에서는 정족수가 요구되지 않는다. 두 번째 총회는 첫 번째 총회가 열렸던 장소와 같은 곳에서 한 시간 이후에 열린다. 두 번째 총회를 소집하면서 의회는 다음 총회는 회원 대표의 수와 무관한 정족수를 가진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총회는 단순 과반수 투표를 실시한다. 각 회원들은 각 한 표를 행사한다. 대표자들은 그들의 허가증과 요구된 회원비를 지불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투표할 수 없다. 투표는 공개 투표이거나 한 회원이 요구할 경우 비공개로 진행한다. 대리 투표지를 이용한 투표는

허용되나 일인당 총 5개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IFOAM 회원과 세계 위원회는 총회에 발의를 할 수 있다. 회원들의 발의는 총회가 열리기 전 적어도 120일 이전에 세계 위원회에 제안되어야 한다. 의제들은 총회가 열리기 전 적어도 60일 전에 발송되어야 한다. 의장의 발제는 전술된 의제를 수정만 할 수 있다. 채택된 의제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일단 채택된 의제의 내용은 다음 회기 총회에서 새로운 발의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다.

총회나 세계 위원회는 총회 선거가 지면이나 전자전송에 의해 시행되는 지를 결정 한다; 이것은 간부나 위원회 임원의 선거 시 투표를 포함한다. 투표는 사람이 직접 참여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이나 인터넷포털사이트를 이용해 이루어진다. 집행부는 특정 개인이 투표과정을 수행할 것을 임명한다. 이 사람은 투표결과를 적절한 형식으로 투표한 회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투표자들은 투표용지와 함께 투표기한, 주소, 투표 제출방법에 대한 정보를 적어도 투표 기한 30일 전에 받는다. 우편을 통한 투표는 우편 시스템에 맡긴 후 4일 후에 받을 것으로 고려한다. 고려하기: 투표는 개인적으로 배달된 날, 우편물로 우편시스템에 맡겨진 날 또는 전자적으로 보내진 그 날에 행해진 것으로 사료된다.

6. 선거(Elections)

정기 총회마다 10명의 세계 위원회 회원을 선출한다. 적어도 정기 총회 3개월 전에 입후보자들을 받아야 하며, 이들은 적어도 다섯 명에 의해 보증 되어야 한다. 적어도 정기총회 60일 전에 입후보자들의 소개서가 회원들에게 보내져야 한다.

세계 위원회는 총회가 끝나기 전에 선출된 회원 중에서 집행부를 선출한다(see §8). 세계 위원회는 세 명의 세계 위원회 회원을 추가적으로 선출할 수 있다. 세계 위원회는 추가적으로 집행부를 선출할 수 있고 그 시기에 이들을 적절한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

7. 세계 위원회(World Board)

세계 위원회는 아직 총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논점들을 결정한다. 세계 위원회는 세계위원회와 집행부, 총회를 위한 절차상 규칙을 확립하며 이것들은 총회에서 승인된다. 세계위원회는 작업반과 위원회, 특정 지역 및 주제와 관련된 과제 그룹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은 또한 특정 과제를 위해 위와 같은 기구들이나 개인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세계 위원회는 참석 회원의 과반수 투표나 공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린다. 세계 위원회에서 3명 이상이 요구하면 6주 전에 공지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8. 집행부(Executive Board)

집행부는 세계 위원회의 회원 중 3명의 회원으로 구성 된다: 의장과 부의장. 집행부는 연맹을 대표하고 총회와 세계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고 총회나 세계위원회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의제를 결정하며 조직의 실적을 평가하고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제기를 한다. 집행부의 결정은 단순한 참석인원의 과반수와 공개투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IFOAM은 법적으로 협력적으로 일하는 집행부의 두 명의 회원에 의해 대표된다.

9. 이사(Executive Director)

세계 위원회는 이사(Executive Director, ED)를 임명하고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집행부와 세계 위원회에 의한 지도 하에 연맹 내의 기구들의 결정을 실행한다.

10. 개정, 변경(Amendments, Modifications)

세계 위원회는 다음 회기 총회에서 관련된 내용이 결정될 때까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법률조항들의 임시적인 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적어도 효력을 발휘하기 전 3개월 전에 모든 회원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세계 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의 어떤 변경 사항도 다음 회기 총회가 열리기 전 적어도 2개월 전에 회원들에게 보내져야 한다.

11. 재정(Finances)

입회비는 총회에 의해 결정된다. 세계 위원회는 이전 회기의 총회에서 모든 정기 총회에 이르는 기간동안의 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세계 위원회가 임명한 회계 감사원에 의해 증명 되어야 한다. 세계 위원회의 임원은 연맹의 부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음 회기 총회까지의 예산은 승인 받기 위해 세계위원회에 의해 총회에 제출된다. 연맹이 종결될 경우 남은 자산은 연맹의 법률조항에 명시된 소득공제의 목적을 위해 공익기관(Körperschaft des öffentlichen Recht)이나 독일의 세금면제 기관에 전달된다.

*2005년 9월 호주의 Adelaide에서 열린 총회에서 승인
최근의 개정안은 2006년 9월 미국의 Kutztown에서 세계위원회에 의해 마련
2008년 Vignola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소개될 것임*